

## 미래캠퍼스 영어진행강의 운영세칙

제정일: 2005.11.08.

개정일: 2020.06.01.

담당부서: 원주교무처 교무부(033-760-2168)

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미래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(이하 '영어강의')의 운영 및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세칙은 미래캠퍼스(원주의과대학 제외)의 전임교원이 미래캠퍼스의 학부에 개설한 영어강의에 적용한다.

제3조 (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) 영어강의를 개발하는 전임교원에게는 소정의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, 그 금액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 (특별강사료) 영어강의에 대하여는 소정의 특별강사료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.(별표1)

제5조 (삭제) 2019. 12. 18.

제6조 (강의평가) 영어강의의 강의평가는 “강의평가 운영위원회”에서 별도의 강의평가 문항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한다.

제7조 (폐강기준) 영어강의 중 수강신청인원이 6명 미만인 전공과목과 10명 미만인 학부과목은 폐강한다.

제8조 (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과목 자격) ①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은 전공선택 과목으로 3학점 이상의 과목 중 이론수업이 주당 3시간 이상 진행되는 과목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(교양기초, 대학교양, 전공탐색 등)은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, 사유서를 제출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전공필수과목은 학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은 학기당 1과목에 한하여 지원한다.

⑤ 2명 이상의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팀티칭과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9조 (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과목 선정 절차) ①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주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신청서 1부.

2. 영문Syllabus 1부.

3. 영문과목개요서 1부.

② “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평가위원회”는 일정한 심사기준(이전 과목과의 중복성 여부, 담당교수의 영어과목 강의평가 수준 등)을 갖고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여부를 심사한다.

③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과목으로 선정된 과목은 수강신청 결과 강의개설이 확정된 후, 지원이 최종 확정된다.

④ 최종 확정된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은 인센티브로 교무부에서 지급한다.

제10조 (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과목의 의무) ①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영어강의는 수업시간 중 4분의 3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②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영어강의는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을 연속으로 개설하여야 한다. 신청학기에 개설되지 않거나, 폐강되는 경우, 이후 개설이 확인되는 학기 중에 지원금을 지급한다.

③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영어강의의 강의평가점수는 소속 대학의 평균점수 이상이어야 한다.

④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의 Office Hour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영문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학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 제외) 영어강의가 의무사항인 외국국적의 전임교원 중 외국인 처우를 조건으로 계약한 자는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2조 (비전임교원) 비전임교원(강사 포함)의 경우 제3조 영어강의신규개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세칙 조항을 적용한다.

제13조 (보칙)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따른다.

## 부 칙

(1) 이 세칙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(2) (시행일) 이 개정세칙(제7조)은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(3) (시행일) 이 개정세칙(제12조)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(4) (시행일) 이 개정세칙(제10조, 제12조, 제13조)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(5) (시행일) 이 개정세칙(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

조, 제12조, 제13조)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

(6) (시행일) 이 개정세칙(제11조)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(7) (시행일) 이 개정세칙(제11조)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(8) (시행일) 이 개정세칙(제10조)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

1. 적용범위: 미래캠퍼스 학부와 일반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영어(또는 원어)로 진행하는 강의

2. 영어강의보조비 지원과목 자격

가. 영어강의보조비는 이론수업시간에만 지원한다.

나. 수강인원이 아래와 같은 폐강기준을 넘는 경우에 지원한다. 단, 동아시아국제학부는 예외로 한다.

\*폐강기준

- 대학원 과목: 3명미만 폐강

- 학부 과목: 전공 6명 미만, 교양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

다.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강의보조비를 지원하지 않는다.

1) 외국인 처우를 조건으로 계약한 교원 및 강사

2) EIC 소속 전임교원

3) 신입교원 임용 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영어강의